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소비자원 정책 개선 건의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66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건의하거나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는 원장이 그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생략)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위원회는 <u>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u>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
<신설>	1. <u>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u>
<신설>	2. <u>제35조의2에 따라 원장이 보고</u>

현행	개정안
③ ~ ⑦ (생략) <신설>	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보고) 원장은 제35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건의하거 나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 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정책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① 그 업무로서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건의할 수 있고(제35조제1항제1호¹⁾), ② 원장은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법 제52조제2항제4호²⁾) 할 수 있음.

- 2024년 12월 기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건의 현황을 살펴

1)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2)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정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개선에 대해 129건을 건의하였고, 96건이 반영되어 반영률은 74.4%이며, 현행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개선에 대해 144건을 건의하였고, 79건이 반영되어 반영률은 54.8%임.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의 현황>

(단위: 건, %)

연 도	건의* (C=A+B)	반 영			미반영** (B)	반영률 (A/C*100)
		전부반영	일부반영	소계(A)		
2020	22	14	3	17	5	77.3
2021	29	22	3	25	4	86.2
2022	20	15	1	16	4	80.0
2023	26	19	-	19	7	73.1
2024	32	19	-	19	13	59.4
계	129	89	7	96	33	74.4

* 사업연도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함.

** 미반영 : 업무참고, 검토중, 미회신 포함

자료: 한국소비자원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의 현황>

(단위: 건, %)

연 도	건의* (C=A+B)	반 영			미반영** (B)	반영률 (A/C*100)
		전부반영	일부반영	소계(A)		
2020	36	15	10	25	11	69.4
2021	34	9	12	21	13	61.7
2022	32	16	4	20	12	62.5
2023	26	6	1	7	19	26.9
2024	16	6	-	6	10	37.5
계	144	52	27	79	65	54.8

* 사업연도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함.

** 미반영 : 업무참고, 검토중, 미회신 포함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러한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제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사항 반영률이 낮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건의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³⁾에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를 검토하여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소비자원 건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를 검토하여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⁴⁾하여야 하는바, 한국소비자원이 건의한 시정조치·제

3)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참고자료 1】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4)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생략)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도개선 등의 반영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도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⁵⁾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예비조사, 현안검토회의 및 공모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기관이 미회신·불수용한 건에 대해 재검토 및 수정·보완 등을 거쳐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⁶⁾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제도개선 건의의 미반영 원인을 분석하고, 건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제도개선 건의의 반영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⁷⁾.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동 지침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선과제 발굴 및 예비개선안 마련, 의견수렴 및 개선권고, 이행계획의 검토 및 결과 공표,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참고자료 2】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6) 최근 5년간 미반영된 소비자원 건의 98건(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의 33건,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의 65건) 중 28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거쳐 2024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 및 의결 과제에 반영한 바 있음.

【참고자료 3】 2024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과제에 포함된 ‘최근 5년 간 미반영 소비자원 건의 목록’

7)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건의 기관의 미반영(업무참고, 검토중, 미회신 등) 사유를 별도로 수집·분석하고 있지 않음. 소비자안전센터의 해외직구 제품 등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분석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관련기관에 개선사항을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된 사례 등이 있는바,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제품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러한 사례에 대해 미반영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올릴 안전을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시정조치 중 중요사항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안전으로 상정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며, 한국소비자원은 제도개선 건의는 연중 소비시장 이슈에 대해 소비자권익 중점의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로써 소비자 정보제공 등과 함께 다양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가 소비자정책 추진의 중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반기별 회의체로써,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통해 제도개선을 권고하므로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모든 제도개선·시정조치 사항들을 보고·안전화 하는 것은 시기적·물리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참고자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2024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안전 상정 및 의결 과제에 포함된 ‘최근 5년 간 미반영 한국소비자원 건의 목록’>

문 의 처
02)6788-5115

【참고자료 1】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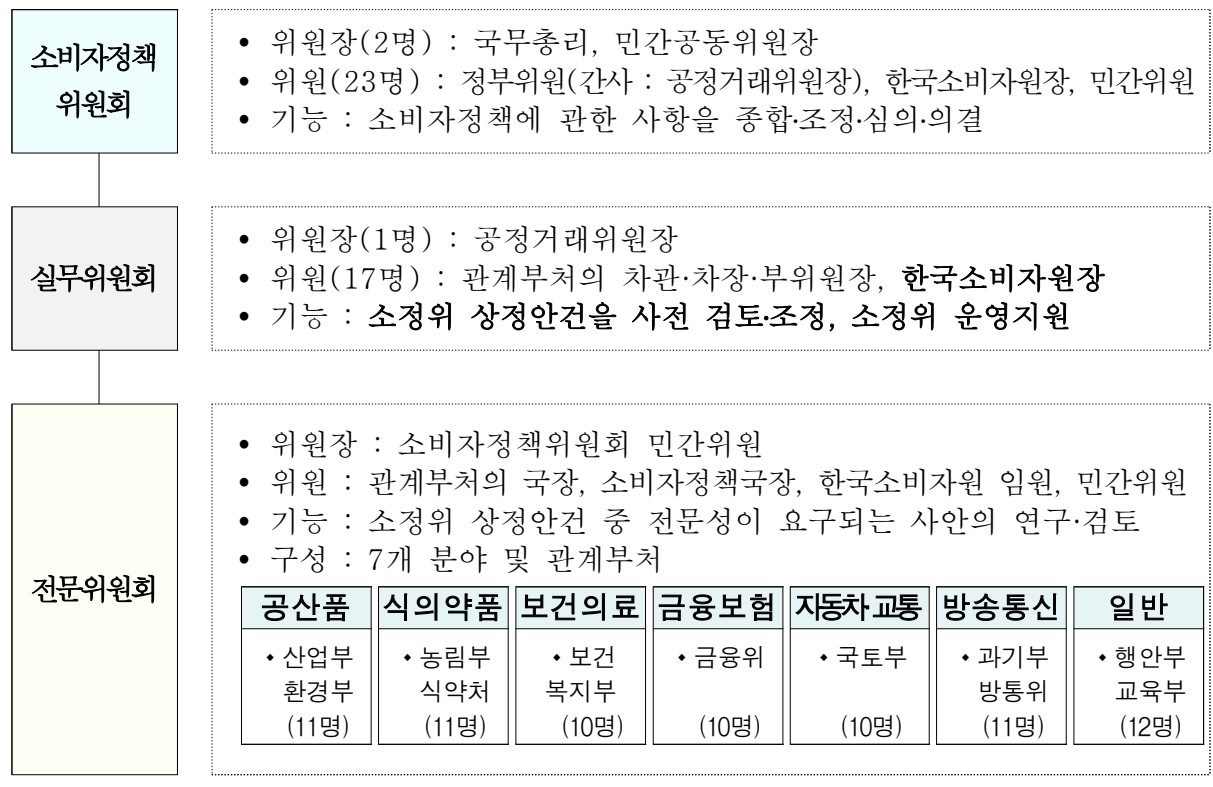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 법 제25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법령 등 제도개선 권고 현황

(단위: 건)

연 도	권고 (C=A+B)	이 행			불이행등* (B)	이행률 (A/C*100)
		이행	이행 중	소계(A)		
2020	7	6	1	7	0	100%
2021	9	4	4	8	1	88.8%
2022	9	4	5	9	0	100%
2023	9	7	2	9	0	100%
2024	9	1	7	8	1	88.8%
계	43	22	19	41	2	95.3%

* 불이행등 : 불이행, 관리종결 포함

* 이행률은 (이행+이행 중)/전체 권고건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법 제25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법령 등 제도개선 권고 과제(2024년도)

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농림축산식품부)

(문제점)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표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중 하나만으로도 표시 가능(의료법의 경우 양쪽에 모두 게시)하게 하여 진료비용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존재

(권고) 이용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분류체계 개선(산업통상자원부)

(문제점) 영유아가 기울어진 요람(바운서)에서 수면하는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분류 시 ‘유아용 침대’로 분류하고 있어 용도 오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권고)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기울어진 요람을 ‘유아용 보육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수면과 관련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금융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지 규정 마련(금융위원회)

(문제점) 금융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소 제기 시 소송을 중지하는 제도를 마련하

고 있으나, 조정 신청 사실 및 종료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절차가 없어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

(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조정 신청 사실 및 조정사건의 종료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 마련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기록보관 및 표시규정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문제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하여 재포장하므로, 소분·조합 및 보관과정에서 안전관련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

(권고) 소비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①소분·조합 및 상담·추천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고, ②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소분·조합일자 등을 표시하는 규정 마련

5.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환경부)

(문제점)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이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직접 요청하여야만 가능

*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등

(권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6. 육상레저시설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문화체육관광부)

(문제점) 번지점프, 집라인 등 육상레저시설은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큼에도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 및 법령 등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권고) 번지점프, 집라인 등 사고 위험이 큰 육상레저시설과 관련한 안전기준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

7. 연소형 방향제 주의사항 표시기준 개선(환경부)

(문제점) 향초나 인센스 등 연소형 방향제는 연소 시 초미세먼지 및 독성물질 등을 생성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에도 환기 관련 주의사항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권고) 소비자가 연소형 방향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8. 집합건물 분양자 의무 규정 마련(법무부)

(문제점) 집합건물은 관리인 선임 전까지 분양자가 관리비 징수를 함에도 공동주택과 달리 보고의무, 회계감사 및 지자체 감독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장기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의 피해 발생 소지

(권고) 집합건물에 장기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분양자도 비용보고, 회계감사 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선

9. 알뜰폰 해지 절차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제점) 대다수의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편·불만 발생

(권고)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상 계약해지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용자 해지에 관한 절차를 추가 제시.

【참고자료 2】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제3조(개선 과제 발굴)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개선 과제는 다음 각 호 예시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굴한다.

1. 각종 언론 매체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
2.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
3. 국민신문고 민원, 1372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분석자료
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③ 삭제

제4조(예비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보고서의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의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조사와 관련된 추진일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현안검토회의)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는 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안 검토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안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과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법령 등의 개선 검토를 제안한 사항
3.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안검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 중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개선 과제에 포함한다.

제6조(기관 내 연계) (생략)

제7조(개선 과제 공모전)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과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및 한국소비자원 원장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비 개선안 마련) ① 한국소비자원은 발굴된 과제 중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예비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한 추진 현황, 그 밖에 의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함) 등에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문헌 조사,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자문 또는 협조를 얻어 예비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9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① ~ ② (생략)

제10조(개선 요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개선 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의 개선 요청서를 작성한다.

제11조(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협력) ① ~ ④ (생략)

제12조(국무조정실 조정) (생략)

제13조(실무위원회 개최) (생략)

제14조(개선안 심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또는 보완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개선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이 타당한 사유 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도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③ 관계 기관은 법령 등의 개선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입장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 ④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5조(법령 등의 개선 권고) 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토대로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별지 제3호의 개선 권고안을 첨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별지 제4호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현안 대응 등 긴급하게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 법령 등의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이행계획의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이 기한 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관계 기관에게 재차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의 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제16조에 따라 접수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게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계획의 공표 등) 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 기관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령 등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거나, 관계 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계 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④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해야 한다.

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전을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전에 대한 의결을 하면, 관계 기관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공표할 내용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9조(이행실태 확인·점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이행실태 확인·점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이행 완료 :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2. 이행 중 : 이행계획 상의 추진 일정을 경과하였지만,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이행하려고 추진 중인 경우
3. 불이행 : 이행계획 상의 추진 일정을 경과한 후에도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추진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4. 관리 종결 :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 법령 등의 개선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사안인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이행실태 확인·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생략)

**【참고자료 3】 2024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안전 상정 및 의결
과제에 포함된 ‘최근 5년 간 미반영 한국소비자원
건의 목록’**

연 번	2024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 및 의결	사 업 연 도	근 거	과제명	건의 주요 내용	건의 기관
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020	52조	경사진 유아용 침대 안전성 시험	■ 경사진 요람 관련 안전기준 및 유아용 침대 분류체계 개선 건의	국가 기술 표준원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024	52조	영아 수면용품 안전실태 조사	■ 영아 수면용품 안전실태조사 관련 결과 공유 및 건의	국가 기술 표준원
3	중점관리물질	2020	52조	클리터류 화장품 안전실태 조사	■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 화장품 전 품목으로 확대 ■ 화장품의 중금속 안전기준 강화검토	식품 의약품 안전처
4	중점관리물질	2020	52조	인조가죽 (합성가죽) 소파 안전실태 조사	■ 소파 등 피부 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 기준 마련 ■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국가 기술 표준원
5	중점관리물질	2021	52조	그림물감 안전실태 조사	■ 그림물감에 대한 방부제 안전기준 마련 ■ 그림물감의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국가 기술 표준원
					■ 그림물감의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환경부
6	중점관리물질	2021	52조	홈트레이닝 용품 안전실태 조사	■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 확대	국가 기술 표준원
7	중점관리물질	2021	52조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안전실태 조사	■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국가 기술 표준원
8	중점관리물질	2021	52조	슬리퍼 안전실태 조사	(접촉성 제품 통합건의) ■ 합성수지재질슬리퍼관리,감독강화 ■ 가죽제품 안전기준 검토 ■ 기타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국가 기술 표준원

연 번	2024년도 소비자정 책위원회 상정 및 의결	사 업 연 도	근 거	과 제 명	건의 주요 내용	건의 기관
9	중점관리물질	2021	52조	레저 스포츠용품 안전실태 조사	(접촉성 제품 통합건의) ■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개선 검토 (제품추가)	국가 기술 표준원
10	중점관리물질	2021	52조	데스크매트 및 마우스패드 안전실태 조사	(접촉성 제품 통합건의) ■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개선 검토 (제품추가)	국가 기술 표준원
					■ 데스크매트의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환경부
11	중점관리물질	2021	52조	조화 안전실태 조사	■ 조화 제품 관리·감독 요청 ■ 단쇄염화파라핀 등 잔류성 오염 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12	중점관리물질	2021	52조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 실태조사	■ 플라스틱 배달 용기 중 재활용되 지 않는 재질의 제한 및 용기 표 준화 방안 마련	환경부
13	중점관리물질	2022	52조	차량용 방향제 안전실태 조사	■ 차량용 방향제 관리·감독 강화	환경부
14	중점관리물질	2022	52조	차량용 온열제품 안전실태 조사	■ 차량용 온열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청(안전 확인 미신고 제품 판매차단 등)	국가 기술 표준원
					■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 성확인 등 점검 강화 요청	한국 제품 안전 관리원
15	중점관리물질	2023	52조	어린이용 키보드 품질시험	■ '어린이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건의	국가 기술 표준원
16	중점관리물질	2023	52조	차량용 생활화학 제품 안전실태 조사	■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관련 조치 결과 공유 및 검토 요청	환경부

연 번	2024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 및 의결	사 업 연 도	근 거	과 제 명	건의 주요 내용	건의 기관
17	중점관리물질	2023	52조	가열식 가습기 안전실태 조사	■ 가열식 가습기 안전실태조사 관련 조치 결과 공유 및 건의	국가 기술 표준원
18	중점관리물질	2023	52조	잔류성오염 물질안전 실태조사	■ 잔류성오염물질 안전실태조사 관 련 조치 결과 공유 및 건의	국가 기술 표준원
19	중점관리물질	2023	52조	습식 스포츠타월 안전성 시험	■ 습식 스포츠타월 유해물질 안전 요건 및 표시기준 마련 건의	국가 기술 표준원
20	중점관리물질	2023	52조	어린이 놀이용 점토 안전성 시험	■ 해외 규제대상 OIT 성분의 위해 성 검토	환경부
21	중점관리물질	2024	52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안전실태 조사	■ 해외직구 안전실태조사 관련 조치 결과 공유 및 통관 관리 협조 요청	관세청장
22	중점관리물질	2024	52조	해외직구 반려 동물용품 안전실태 조사	■ 해외직구 안전실태조사 관련 조치 결과 공유 및 통관 관리 협조 요 청	관세청장
23	육상레저시설	2022	52조	하강레포츠 시설 안전실태 조사	■ 하강레포츠시설의 운영 관련 안전 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 ■ 지역 내 하강레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문화 체육 관광부
						양양군
						용인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여주시
						경상북도
						가평군

연 번	2024년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 및 의결	사 업 연 도	근 거	과 제 명	건의 주요 내용	건의 기관
24	육상레저시설	2023	52조	실내 인공암벽장 (볼더링 시설) 안전실태 조사	■ 인공암벽장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국가 기술 표준원
					■ 인공암벽장 안전 관리 방안 마련 검토	문화 체육 관광부
25	육상레저시설	2023	52조	무인키즈풀 안전실태 조사	■ 무인키즈풀(위터룸)에 대한 안전기 준 마련	행정 안전부
26	육상레저시설	2024	52조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실태 조사	■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내 하강형 스포츠 체험기구(번지점프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행정 안전부
					■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내 하강형 스포츠 체험기구 중 개선 권고 사 항에 대한 조치 관리 검토	경기도
					■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내 하강형 스포츠 체험기구 중 개선 권고 사 항에 대한 조치 관리 검토	대구 광역시
					■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내 하강형 스포츠 체험기구 중 개선 권고 사 항에 대한 조치 관리 검토	양산시
27	알뜰폰	2022	35조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 무선통신 계약 표준안내서 개정 건의(유료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 및 동의 서명란 추가 등)	방송 통신 위원회
28	알뜰폰	2022	35조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 이용 실태조사	■ 이동전화단말기 AS 및 보상서비 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선(완전 파손시 보상내용, 보험효력개시일 추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자료: 한국소비자원